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3733 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5. 26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5. 27.

2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하여 2026년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20,418백만원에서 34,354백만원으로 13,936백만원 증가하였음.
- 나. 이에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13,936백만원 증액함에 따라

‘재무활동’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27,360백만원에서 41,296백만원으로 13,936백만원(50.9%) 증가되었음.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

[수입계획]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	67,707,372	81,643,625	13,936,253	20.6
세외수입		47,289,000	47,289,000	-	-
경상적세외수입		1,094,000	1,094,000	-	-
	이자수입	1,094,000	1,094,000	-	-
	공공예금이자수입	1,094,000	1,094,000	-	-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등		46,195,000	46,195,000	-	-
	부담금	46,195,000	46,195,000	-	-
	부담금	46,195,000	46,195,000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보전수입등	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	예치금회수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	예치금회수	20,418,372	34,354,625	13,936,253	68.2

[지출계획]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	67,707,372	81,643,625	13,936,253	20.6
도로시설물관리		40,332,274	40,332,274	-	-
도로굴착복구(도로굴착복구기금)		39,900,000	39,900,000	-	-
도로굴착복구공사		39,900,000	39,900,000	-	-
시설비 및 부대비		39,900,000	39,900,000	-	-
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	432,274	432,274	-	-
일반운영비		432,274	432,274	-	-
재무활동	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보전지출	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여유자금 예치	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일반예치금		27,360,098	41,296,351	13,936,253	50.9
행정운영경비		15,000	15,000	-	-
기본경비		15,000	15,000	-	-
기금관리비		15,000	15,000	-	-
일반운영비		15,000	15,000	-	-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법’) 제11조제2항1)에 따라 정책사업 중 ‘예치금(재무활동)’의 지출금액을 당초 273억 6천만원에서 139억 36백만원(50.9%)이 증액된 412억 96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건임.

[표]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변경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		지 출		
				당 초	변 경	증·감
운용규모				67,707	81,643	증) 13,936
계				40,347	40,347	
도로굴착 복구공사	계			39,900	39,900	
	시설비 및 부대비	시 설 비	소계	37,200	37,200	
			직접복구비	33,700	33,700	
			사후정비비	3,500	3,500	
		감리비		2,700	2,700	
	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계			432	432
공공운영비			432	432		
일반운영비	계			15	15	
	사무관리비			15	15	
일반예치금				27,360	41,296	증) 13,936

- 1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■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현황

-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「도로법」 제91조2)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 제3조3)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한 비용과 기금예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,
-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 제5조4)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,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,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,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(〔표〕 참조), 연평균 약 42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약 400억원의 지출이

-
- 2) 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⑤ ~ ⑥ (생략)
- 3) 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
② ~ ⑤ (생략)
- 4) 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1. 도로굴착복구공사
 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 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, 연구, 감독업무
 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

이뤄지고 있으며,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는 예치금으로 처리하여 차년도 예치금 수입에 반영하고 있음.

[표]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집행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21년도 (결산)	2022년도 (결산)	2023년도 (결산)	2024년도 (결산)	2025년도 (결산)
수 입 액		33,455	41,729	45,429	50,629	42,912
	원인자부담금	33,032	41,109	44,380	49,319	41,624
	이자수입 등	423	620	1,049	1,310	1,288
지 출 액		35,219	32,110	40,269	41,621	50,108
도로굴착복구공사	소 계	33,396	31,195	39,512	41,200	49,702
	직접복구비	29,197	26,204	35,324	39,488	42,962
	사후정비비	2,761	3,500	2,755	1,712	3,152
	감리비및부대비	1,438	1,491	1,433	-	3,588
	기타(전산운용 등)	1,823	915	757	421	406
사고이월		1,080	1,382	1,027	1,115	211
증 감		감 2,844	증 9,619	증 5,160	증 9,008	감 6,381
연도말 잔액(예치금)		16,893	26,211	31,727	40,647	34,354

-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/지출규모 및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에 수립하고, 당해연도 상반기(1월)와 하반기(7월)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사물량에 대한 지출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고 있음.

- 이때 법 제11조제2항5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

5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

계획의 정책사업⁶⁾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다만 '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'는 예외로 하고 있음.

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본 변경안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 중 '일반예치금(재무활동)'의 지출금액을 당초 계획(273억 6천만원)보다 139억 36백만원(50.9%) 증액한 412억 96백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이는 '25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 결산('26.3월) 결과, 기금 수납(원인자부담금 등)과 지출액(도로굴착복구공사 집행액 등) 사이에 발생한 추가 여유자금(139억 36백만원)을 '26년도 수입계획 중 '예치금 회수'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지출계획의 정책사업 중 '예치금(재무활동)'을 증액하려는 것임([표] 참고).

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6)「지방재정법」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 (정책사업·재무활동·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별표10'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

[표]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		구 분	지 출		
	당 초	변 경	증·감		당 초	변 경	증·감
운용규모	67,707	81,643	증) 13,936	운용규모	67,707	81,643	증) 13,936
계	47,289	47,289		계	40,347	40,347	
원인자 부담금	46,195	46,195		도로굴착복구공사	39,900	39,900	
이자수입	1,094	1,094		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432	432	
				일반운영비	15	15	
예치금 회수	20,418	34,354	증) 13,936	일반예치금	27,360	41,296	증) 13,936

- 2025년도 기금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([표] 참고),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은 당초 계획 대비 1.2%가 증가하여 대체로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반면,

[표]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		구 분	지 출				
	계 획	실 적	비 율		계 획	실 적	비 율		
운용규모	83,686	84,673	101.2%	운용규모		83,686	84,673	101.2%	
계	41,925	42,912	102.4%	계		63,268	50,108	79.2%	
원인자부담금	41,129	41,624	101.2%	도로굴착 복구공사	계		62,823	49,702	79.1%
이 자 수 입	796	1,288	161.8%		시설비 및 부대비	시설비	58,972	46,114	78.2%
						감리비	3,815	3,588	94.0%
						시설부대비	36	0	0.0%
					계		430	401	93.3%
				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사무관리비		5	5	100.0%
					공공운영비		425	396	93.2%
				일반운영비	계		15	5	33.3%
					사무관리비		15	5	33.3%
계	41,761	41,761	100.0%	계		20,418	34,565	169.3%	
전년도 사고이월	1,115	1,115	100.0%	당해연도 사고이월			211	-	
예치금 회수	40,646	40,646	100.0%	일반예치금		20,418	34,354	168.3%	

- 지출 부분의 도로굴착복구공사비는 당초 628억 23백만원의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원인자의 공사 취소 및 연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지출은 계획 대비 79.1%인 497억 2백만원에 불과하며 미집행된 대규모 여유자금의 결산을 거쳐 다시 예치금으로 편입되면서 예치금 규모가 증액(204억 18백만원→343억 54백만원)된 것임.
- 결론적으로, 본 변경안은 법정절차인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 여유자금을 증액 편입하는 단순 회계상의 정리 절차로서 본 변경안과 같이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이 매년 사업시행자로부터 상·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심의를 통해 조정된 공사물량을 바탕으로 확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에서 공사 취소 및 연기 등으로 인해 지출이 당초 계획에 못 미쳐 대규모 여유자금이 재예치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심의 단계에서 변동 소요에 대한 검증이 다소 미흡했거나 추계가 과다 편성되었음을 의미하는바,
- 향후 공사 계획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규모 기금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막고 예산 운용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.